

제 1861 호
1994. 11. 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최 병 렬
편집인 : 공 보 관 김 우 석
전 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649 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제 2650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5
제 2651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제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	6
제 2652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6

● 훈 령

제 809 호	서울특별시모사전송기통신망운용규정폐지규정	7
---------	-----------------------	---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서로서로 고통분담 고루고루 행복분담”

1574

● 고 시

- 제 1994-370 호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의위치변경 7
- 제 1994-372 호 사료성분등록 8

● 공 고

- 제 1994-374 호 소방설비공사사업영업정지공고 9
- 제 1994-377 호 비료생산업폐업공고 9
- 제 1994-378 호 제2종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공고 9

● 구 고 시

- 제 1994-44 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실시계획인가에따른고시(서초) 10
- 제 1994-3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중구) 10

● 구 공 고

- 제 1994-236 호 건축허가및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를위한서류공람공고(성북) 11
- 제 1994-290 호 하천의점용허가공고(서대문) 11
- 제 1994-240 호 전문건설업면허양도인가공고(관악) 11
- 제 1994-239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송파) 12
- 제 1994-223 호 건설업면허취소(중구) 12
- 제 1994-332 호 건설업면허갱신공고(강남) 12

● 교육청공고

- 제 1994-80 호 시의회부의안전공고 13

● 인 사 발 령

규 칙

서울특별시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장 최병렬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649호

서울특별시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
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
8-1호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다음에 별지 제8-1호 및
별지 제8-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8-1 호서식〉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

인 사	적 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호		
			한 자			
		주 소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소 속	직 책		
	부터					까지
근 무 년 한	년 월	최 종 직 책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८३ ८२ ८१

○○소방서장

〈별지 제 8-2 호서식〉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 발급대장

[illegible]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내무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근거로 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 발급(안 제5조)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장 최병렬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650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육실

제4조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육실: 영세근로자 및 기술교육생의 자녀로서 3세 이상의 취학전 아동

3. 능력향상교육: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내 거주여성(저소득부녀자 우선)과 부녀복지시설에 수용된 18세 미만 및 서울특별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여성 중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

제6조제5호 중 “위탁시키고자”를 “보육의뢰하고자”로 하고, “아동위탁신청서”를 “아동보육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육실의 이용범위 및 운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육실의 이용은 기술교육생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정원 미달일 경우에 한하여 영세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허용한다.

2. 보육실의 보육기간은 기술교육 기간으로 하고 보육시간은 당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보육아동에 대하여는 간식을 제공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육일지를 비치한다. 다만, 영세근로자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별표 1〉 중 정원란의 “탁아”를 “보육아동”으로 한다.

〈별표 제6호서식〉의 제목 “아동위탁신청서”를 “아동보육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준수사항서약란의 “수탁”을 “보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부녀복지관 이용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자격미달로 복지관 이용이 제한되었던 부녀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하여도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기반조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녀복지관 이용자격을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내 거주여성에서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내 거주여성(저소득부녀자 우선)과 부녀복지시설에 수용된 18세 미만 및 서울특별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여성 중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으로 함(안 제4조제3호).

나. 용어 중 탁아 및 수탁을 각각 보육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의관직지정예관한규칙증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시장 최병렬 ㉠

●서울특별시규칙제2651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
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
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수입금출납원·영업과장”을 “수입금출납원·관리과장”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총무과장(과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계장으로 하고)”를 “물품출납원·경리부서의 계장(계제가 없는 기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로 하며, “본임물품출납원·수도사업소의 각 실과장”을 “본임물품출납원·각 부서의 주무계장(계제가 없는 기관은 각 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전도자급출납원”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하 날부터 시행하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부지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을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맞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도사업소 등의 회계관계공무원
의 관직지정 변경(안 제3조)

- (1) 수입금출납원: 영업과장→관리과장
- (2) 물품출납원: 총무과장→경리부서의 계장(계계가 없는 기관은 물품출납공무원)
- (3) 분임물품출납원: 수도사업소의 각 실과장→각 부서의 주무계장(계계가 없는 기관은 각 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

제6조제2항 중 “3등실”을 “기준병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의료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지 않은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타 시도 거주자의 무료진료 조항 삭제(안 제2조)

나. 입원 보증인(안 제3조)

입원보증인을 재산세 납부실적에 관계없이 1인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함.

다. 시립병원 수가 감액대상자 중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2호).

훈 령

서울특별시모사전송기통신망운용규정제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장 최병렬 ㉠

●서울특별시훈령제809호

서울특별시모사전송기통신망운용규정
폐지규정

서울특별시모사전송기통신망운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관련규정〉

1. 폐지이유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 91. 9. 30) 제21조제2항에 의거 모사전송기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보안검토 절차가 폐지되었고, 내부부의 모사전송기운용및보안관리지침(내무부 총무 12460-392, 94. 2. 15)제정 시행으로 폐지하고자 함.

2. 관련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 91. 9. 30) 제21조제1항

○전신, 전신타자,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산망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통제관이 기안문의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산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검토를 한 문서에는 별표 6의 보안검토폭인을 그 문서의 오른쪽 위 여백에 찍어야 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4-370호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의위치변경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장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3-1	
※ 전화번호 변경: 1994. 11. 21부터 이용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소 장 실	3470-1300~1	전 산 관 리 과	3470-1421~3
전산기획부장	3470-1310	정 보 통 신 과	3470-1461~3
전산관리부장	3470-1410	컴 퓨 터 실	3470-1451~3
총 무 과	3470-1321~3	통신망운영실	3470-1481~3
전 산 기 획 과	3470-1341~3	당 직 실	3470-1318
전 산 처 리 과	3470-1361~3		

●서울특별시고시제1994-372호

자료성분등록

자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합 및 단미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같
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장

1. 등록업체명: (주)이지시스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대표자: 지원철

등록사료(2종): 미국, 덴마크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 류	사 료 의 명 칭	사 료 의 사 용 범 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 슘	수 분	조섬유	조회분
서울-663	수입단미 사 료 (체 스 락)	발효사료2호 료용	배합사료 원	20.0% 이 상	-% 이 상	-% 이 상	16.0% 이 하	2.5% 이 상	10.0% 이 하
서울-664	수입보조 사 료 (다카 프로테 인 바인더)	결 착 제 착제	펠렛사료 결	65.0% 이 상	-% 이 상	-% 이 상	10.0% 이 하	-% 이 하	15.0% 이 하

2. 등록업체명: 삼산통상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36-3

대표자: 이정영

등록사료(1종): 일본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 류	사료의 명칭	사 료 의 사 용 범 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 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665	수입배합 사 료	육성자라용 사 료	입식후 3개월 이후	49.9% 이 상	3.0% 이 상	2.5% 이 상	1.7% 이 하	1.0% 이 하	16.0% 이 하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4-374호

소방설비공사업영업정지공고

소방법 제5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
업면허를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처분하였기
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장

상호(영업소재지)	대표자	처분면허(번호)	영업정지기간	처분사유
대원소방설비공사 (영등포구 대림3동 1051-5)	정상식	공사업 제1종 (기계분야) (제94-122호)	94.11.14~94.12.28 (1월 15일)	면허기준 중 기술 능력 미달
정광종합건설(주) (서초구 서초동 1534-5)	이희정	공사업 제1종 (기계분야) (제92-69호)	94.11.14~95.2.13 (3월)	면허기준 중 기술 능력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1994-377호

비료생산업폐업공고

비료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폐업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01-가-유기질 14-1	허가일자	76. 11. 11
생산성명	유영학	상호	(주)미원
업자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6-14 렉스(A) A-103		
제조장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		
비료의종류	아미노산발효부산물비료(박)		
폐업일자	1994. 11. 10		
폐업사유	생산 중단		

●서울특별시공고제1994-378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공고

전기공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다음과 같이 취소

하였기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	비고
0208	삼일전선	노병조	은평구 불광동 484-108	면허취소	면허기준 미달	94. 11	소재지 불명 기술자 부족
1555	성환전기	안병환	서초구 방배동 871-9	면허취소	면허기준 미달	94. 11	소재지 불명 기술자 부족

구 고 시

●서초구고시제1994-44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

인가에따른고시

1. 우리구 반포동 505 외 11필지에 대하여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김수환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변경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1994-258호(94. 8. 5)로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초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11. 21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 외 1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 2) 명칭: 강남성모병원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 2) 성명: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이사장 김수환

라. 사업의 규모

- 1) 사업시행 면적: 110,600㎡
- 2) 건물규모: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19,867.89㎡
- 3) 용도: 종합의료시설(의과학 연구원 등)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사업의 착수일: 93. 7. 1
- 2) 준공예정일: 96. 10

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중구고시제1994-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같은 법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중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11. 21

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류	8m	1,305m	신당동 52-212	신당동 327-60	신당동 349-79 옆 도로단
변경	소로	2류	8m	1,035m	신당동 52-212	신당동 327-60	선 L=20m 폐지(재개발사업으로 기폐지 L=270m)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3류	59	25m	240m	합		동	중 립 동		폭원변경
변경	중로	2류	361	15m	240m	의주로2가		16-68	중립동 2-3		B=25→15m

다. 관계도면: 중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
과 비치도면과 같음.

구 공 고

●성북구공고제1994-236호

건축허가및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허가를위한서류공람공고

1.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임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건축과(920-3390)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4. 11. 21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장제시장 재건축

나. 위치: 서울 성북구 장위동 152-1

다. 사업내용: 장제시장 1,716.0㎡ 재건축

라. 용도: 판매, 업무, 운동시설

마. 시행자: 유한회사 관훈산업사

바. 공람기간: 1994. 10. 27~1994. 11. 9
(14일간)

●서대문구공고1994-290호

하천의점용허가공고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의 점용허가를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22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11. 21

서 대 문 구 청 장

허 가 연월일	하천명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4.11	홍제천	홍제동 9-507~9-263 앞 하천	앞 하천	400㎡	94.11 ~영구	서대문구 합동 27-1	서울시 종합건설 본부장

●관악구공고제1994-240호

전문건설업면허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를 인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11. 21

관 악 구 청 장

양 도 인가일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94. 11.14.	철근콘크리트 서울-10-137 상하수도설비 서울-10-37	대 일 종합건설	이상일	관악구 봉천동 1568-2		웅 진 건설산업	이희경	종로구 139-1	안국동

●승파구공고제1994-23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양도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11. 21

승 파 구 청 장

1. 양도인가 연월일: 서기 1994년 11월 10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토 공사업(면허번호 92-서울-02-289) 철근콘크리트공사사업(면허번호: 92-서울-10-360)
3.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양도자

부장토전(주) 대표 정대균, 이병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7-6

○양수자

(주)용전엔지니어링 대표 김광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84-3

●중구공고제1994-223호

건설업면허취소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면허 자진 반납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공고합니다.

1994. 11. 21

중 구 청 장

전문건설업 면허취소 내역

면허번호	업종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부산 08-39	창호	한화종합화학(주)	박원배	장교동 1	94. 11. 14	자진반납

●강남구공고제1994-332호

건설업면허갱신공고

건설업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갱신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11. 21

강 남 구 청 장

업종 및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면허유효 기간
설비공사사업 (제82-12-71)	(주)동우양행	임인용	강남구 삼성동 1~4	94. 12. 18~99. 12. 17

교육청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1994-80호

시의회부의안전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11. 21
서울특별시교육감

구 분	안 전 명	주관부서
조례(안)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안)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인사발령

7급 기술직공무원 복직

●1994년 11월 12일자

영 제535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한창훈 620807-1*****	복직을 명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수의 주사보

서울특별시장

6급 기술직공무원 면직

●1994년 11월 12일자

영 제536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이윤주 530508-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 주사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면직

●1994년 11월 14일자

영 제537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신재명 660509-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세종문화회관	지방건축원 (10등급)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휴직

●1994년 11월 14일자

영 제538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중배 380501-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운전원 (10등급)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휴직

●1994년 11월 21일자

영 제538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이상준 741225-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 (10등급)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복직

●1994년 11월 14일자

영 제539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박종구 730508-1*****	복직을 명함	서울지방경찰청	지방방호원 (10등급)

서울특별시

3급 공무원 의원면직

◎1994년 11월 14일자

영 제540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신중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내무국	지방 부이사관

서울특별시장

행정직 4급 전보

◎1994년 11월 14일자

영 제541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홍권	내무국 본부 근무	내무국 비서관	서기관

서울특별시장

5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1994년 11월 11일자

영 제26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신동문 510302-1*****	난지도관리사업소 소장에 보함	난지도관리 사업소	지방토목 사무관

청소사업본부장

기능직공무원 전보

◎1994년 11월 11일자

영 제93호

연번	성명	제청		현직	
		부서	직급	부서	직급
1	채철기	강동수도 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10등급	구의정수 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10등급

상수도사업본부장